

第13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面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面
3.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6面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전용허가및전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975

번호

제출일자 : 2003.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새로조정하는 등으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 대체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7조).

나.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8조)

다.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함(안 제16조).

라.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

마.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1923(2003.10.16)호 및 서울시 세제 13430-1218(2003.10.17)호와 관련임.

4. 예산수반사항 : 없 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로 “50%”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 -----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7.(생략)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 1.~4.(현행과 같음)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 6.~7.(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생략)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1. ----- ----- 부동산 2. ----- 건축물----- ----- 부동산 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파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 ----- -----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 ----- ----- ----- -----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 ----- ----- -----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8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 5항단서- ----- -----100분의 50 -----. ----- ----- -----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 <삭 제>